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적용 대상자의 적합성

글.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가. 원안의 내용 및 취지

- 원안은 항만시설의 경비 · 검색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의 임직원에 대해서 뇌물죄 등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려는 것임.

원 안	심 사 안
제4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8조에 따라 보안심사업무 등을 대행하는 대행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1조의3에 따른 항만보안 위탁업체와 제38조———————————————————————.

나. 검토대상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규정은 공공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임직원과 개인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의 수수 등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공무원과 같이 보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 원안과 같이 항만시설소유자(민간)로부터 경비 · 검색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의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는 것이 적합한지 검토가 필요함.

다. 검토의견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과 개인, 각종 위원회의 위원 등이나,
  - 이러한 기관의 임직원 모두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업무의 공공성, 수탁업무의 성질, 임직원의 업무의 관여 정도 등에 따라 임직원 모두를 적용 대상으로 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할 것임.

- 원안의 경우, 항만시설의 경비 · 검색업무는 항만시설소유자에게 부과된 업무로서 항만시설소유자는 국가 뿐만 아니라 항만공사, 민간 등이 포함되므로 민간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의 임직원까지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된다는 문제가 있음.

- 다만,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의 취지는 다루는 업무의 공공성이 크기 때문에 그 업무 수행 시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 다수의 인명피해나 국가 안보의 위기 상황과 직결되는 항만시설의 보안 확보 · 유지를 위하여 항만시설소유자에게 경비 · 검색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해당 업무의 공공성은 매우 크다는 점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둘 필요는 인정됨.

※ 특히 보안검색 업무의 경우, 법 제22조제2항에서는 항만시설소유자가 파업 등으로 보안검색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경찰관서의 장 또는 세관장이 직접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업무의 공공성을 인정할 수 있음.

- 또한, 민간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기관의 임직원에게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을 적용한 입법례도 있음.

〈참고 입법례〉

「교통안전법」

제34조 (교통시설설치자의 교통안전진단)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도로 · 철도 · 공항 · 항만 등의 교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교통시설설치자"라 한다)는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교통안전진단기관(이하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이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통안전 관련 공공기관(이하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3.28., 2012.6.1.〉

② (생 략)

제6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4조 및 제36조에 따라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교통안전진단기관의 임 · 직원,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교통안전과 관련된 전문기관 · 단체의 임 ·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공동주택관리법」

제48조(하자진단 및 감정) ① 사업주체등은 제37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등의 하자보수 청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등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보수책임이 있는 하자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하자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진단을 의뢰받은 안전진단기관은 지체 없이 하자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체등과 입주자대표회의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제9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40조제1항에 따른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 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
2. 제48조제1항에 따라 하자진단을 실시하는 자
3.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 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

라. 심사안

- 항만시설 경비 · 검색업무의 공공성과 입법례를 고려하여, 원안을 수용함.

현 행	원 안	심 사 안
제4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8조에 따라 보안심사업무 등을 대행하는 대행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1조의3에 따른 항만보안 위탁업체와 제38조――.	제4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3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비 · 검색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의 임직원 2. 제38조에 따라 보안심사업무 등을 대행하는 대행기관의 임직원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위기가족긴급지원의 절차 및 방법

(안 제2조의3)

글.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가. 원안의 내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인하여 가족의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원활하게 가족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긴급하게 필요한 범위에서 지원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개정됨에 따라, 위기가족긴급지원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현 행	심 사 안
〈신 설〉	제2조의3(위기가족긴급지원의 절차 및 방법) ① 누구든지 제2조의2에 따른 재난으로 가족의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가족(이하 “위기가족긴급지원대상 가족”이라 한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기가족긴급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위기가족긴급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또는 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위기가족긴급지원 담당공무원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위기가족긴급지원대상 가족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가족긴급지원이 필요한지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 또는 관할 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위기가족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기가족긴급지원의 종류와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기가족긴급지원대상 가족에 대하여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기가족긴급지원의 종류와 내용을 결정하기 전에 위기가족긴급지원 담당공무원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지원을 하게 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확인을 하는 위기가족긴급지원 담당공무원등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나. 검토대상

- 위기가족긴급지원의 주체

다. 검토의견

-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에 의하여 가족의 부양 · 양육 · 보호 · 교육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원활한 가족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긴급하게 필요한 범위에서 지원 (이하 "위기가족긴급지원" 이라 한다)을 하는 의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음.

- 그러나 부처 원안에서는 위기가족긴급지원의 요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하도록 하고, 위기가족긴급지원을 하는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문제됨.

- 검토 결과, 원칙적으로는 법률에서 규정한 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를 위기가족긴급지원의 주체로 정하여야 하나, 현재 위기가족긴급지원 수요 등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위기가족긴급지원을 요청받아 지원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차후에 국가가 위기가족긴급지원을 직접 할 필요가 있을 때 시행령을 개정하여 위기가족긴급지원주체에 국가를 추가하는 것으로 소관부처와 합의함.

라. 심사안

- 위와 같은 사항을 반영하고 소관부처와 합의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안과 동일하게 정리함.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제급여 환수를 위한 강제징수

(원안 제21조)

글.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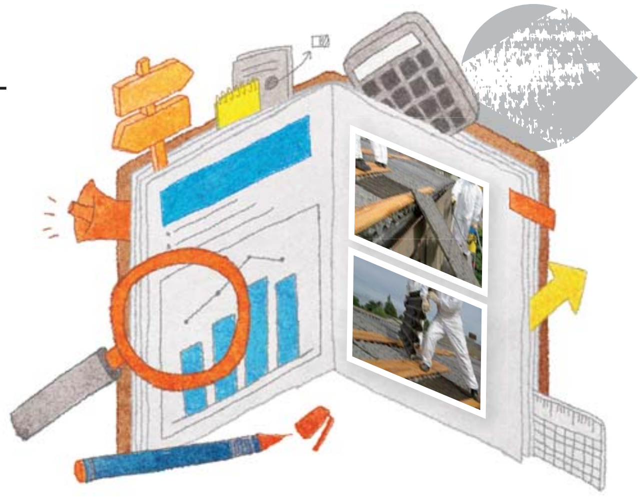

가. 원안의 내용

- 원안은 석면피해로 인한 구제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잘못 지급된 구제급여의 환수주체를 환경부장관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함)으로 변경하고, 기술원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하도록 함(원안 제21조)

※ 이 법의 개정으로 석면피해인정,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등의 석면피해구제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이관함.

현 행	심 사 안
제21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급여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를 말한다)을 징수하여 제24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21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기술원은**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기술원은 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를 환수하는 경우에는 환수금을 내야할 자가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나. 원안의 문제점

- 환경부는 석면피해로 인한 구제급여 지급 기관 및 구제급여 환수 기관이 기술원과 환경부장관으로 이원화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원안과 같이 구제급여 환수의 주체를 "환경부장관" 에서 "기술원" 으로 변경하면서 구제급여 환수를 위한 체납처분 권한까지 부여함.

- 그러나, 체납처분은 의무자가 독촉장에 의해 지정한 납부기한까지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 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이를 매각하고 청산하는 일련의 강제징수인바,
  - 원안과 같이 국가로부터 구제급여 환수 업무를 위탁 받은 기술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 잘못 지급된 구제급여의 환수를 위한 강제징수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적합한지가 문제됨.

다. 행정상 강제징수에 법적 근거 및 입법례 검토

1. 행정상 강제징수의 개념 및 법적 근거

- 행정상 강제징수란 국민이 국가 등 행정주체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가 이행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행정상 강제집행수단을 말함.

- 행정상 강제징수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을 수반하므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국세납부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서 일반적으로 강제징수를 인정하고 있음

2. 강제징수 입법례

- 의무를 명하는 행위와 의무내용을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행위는 별개의 행위이므로 행정법상의 의무를 명할 수 있는 명령권의 근거가 되는 법이 동시에 행정강제의 근거가 될 수는 없고, 각각 별도의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함.

- "강제징수" 의 법적 근거에 관한 입법례를 살펴보면, 국가가 부담하는 급여와 관련한 강제징수에 대하여 국가가 아닌 공공기관이 급여 징수권한을 가지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사례가 있음.

  * 입법례: 붙임1 (P13 ~ P15)

  - 국가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급여, 산업재해보상급여, 국민건강보험급여 등 사회보장적 성격의 사업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 등의 공공기관이 위탁받아 하는 경우 급여의 지급 권한 외에도 잘못 지급된 급여 등의 징수 환수 및 이를 위한 강제징수도 수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다만, 위탁 받은 기관이 강제징수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도록 하고, 나아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는 등의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라. 검토의견

- 이 법의 목적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었으나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그동안 석면사용으로 인한 혜택을 공유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산업계가 함께 마련한 재원으로 기금을 설치하여 구제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것인바,
  - 구제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안에 완전한 환수가 이루어져야 이 법의 목적에 맞게 구제가 필요한 석면 피해자에게 제대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것임.

- 국가가 부담하는 급여와 관련한 강제징수에 대한 다른 입법례에서 해당 업무를 위탁 받은 공공기관이 급여의 지급 권한 외에도 잘못 지급된 급여 등의 징수권한을 가지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강제징수 업무도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 이는 부당하게 지급된 사회보장 급여에 대한 조속하고 완전한 환수라는 공익적 필요성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석면피해구제법」 제34조에 따르면 석면피해구제 분담금 징수에 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준용하고 있는바,
  -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석면피해구제 분담금 부과 · 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석면피해구제 분담금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고 있음.

- 원안에서도 기술원이 구제급여 환수금을 징수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어 절차적 적법성을 보장할 수 있는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고,
  - 더욱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에 제32조 따르면 기술원의 임직원은 형법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 규정이 적용되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성과 책임성이 확보된다고 할 것임.

마. 심사결과

- 원안을 유지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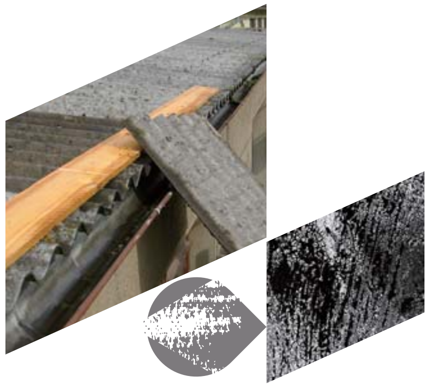

입법례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석면피해구제분담금)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 이라 한다)을 징수하여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이하 “사업주” 라 한다)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주에 대하여는 분담금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1. 상시근로자 수가 20명 미만인 사업주(건설업은 제외한다)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보험료징수법” 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
③ 제2항제1호의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준용) 이 법에 따른 **분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 및 징수에 관하여는**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11까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 제20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및 제5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또는 **“보험료” 는 “분담금” 으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 은 “환경부장관(이 법 제51조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말한다)”** 으로,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 또는 “보험료율” 은 “분담금률” 로, “월별보험료” 는 “월별분담금” 으로, “보험가입자” 는 “사업주” 로, “개산보험료” 는 “개산분담금” 으로, “보험연도” 는 “회계연도” 로, “보험관계” 는 “석면피해구제분담금관계” 로, “확정보험료” 는 “확정분담금” 으로, “보험사무” 는 “석면피해구제분담금사무” 로, “ 「고용보험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는 “환경부장관” 으로 본다.

제51조(권한의 위임 · 위탁)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제31조에 따른 **분담금의 부과 · 징수에 관한 사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지원금의 환수) ① 국가는 제21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환수할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환수대상이 되는 지원금은 공단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환수에 관하여는 제27조, 제28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 은 “공단” 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환수의 구체적인 기준 및 환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징수금의 체납처분 등) ① 건강보험공단은 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보험료나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른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 라 한다)로 하여금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는 공단이 한 것으로 본다.

③ 건강보험공단은 제2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2.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자가 제1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보험급여의 지급이 보험가입자 · 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의 거짓된 신고, 진단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그 보험가입자 · 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공단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진료비나 약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진료비나 약제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제4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급받은 경우
2. 제40조제5항 및 제91조의9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진료비나 약제비를 잘못 지급받은 경우

제85조(징수금의 징수) 제39조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 제78조에 따른 장해특별급여액의 징수, 제79조에 따른 유족특별급여액의 징수 및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하여**는 **보험료징수법**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 제39조, 제41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 은 “공단” 으로 본다. 〈개정 2010. 1. 27.〉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① 공단은 제57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8조의2 및 제101조에 따라 보험료등을 내야 하는 자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중 1명에게 한 독촉은 해당 사업장의 다른 사용자 또는 세대 구성원인 다른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2.3., 2016.3.22.〉

② 제1항에 따라 독촉할 때에는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④ · ⑤ (생 략)

「별정우체국법」

제30조(급여의 환수) ① 연금관리단은 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와 환수 비용을 더하여 징수하고, 제2호나 제3호의 경우로서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2.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그 밖에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연금관리단은 제1항에 따라 급여를 환수할 때에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제2항과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연금관리단의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본다.**

「공무원연금법」

제31조(급여의 환수) ① 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는 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로서 환수금을 내야 할 자가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2.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그 밖에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급여를 환수할 때**에 환수금을 내야 할 자가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하면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 「국세징수법」 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제2항과 제3항 단서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공단의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본다**.